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13. 9. 3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8.22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3.8.27.

다. 상정일자 : 제180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9.3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이 준 범 복지행정과장

가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,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- 1)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때에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대상과 신청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의2)
- 2)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조문의 표현 변경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의 개정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,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자긍심과 명예를 선양코자 하는 것임.

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과 공헌이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어야 하고, 또한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·발전시키며,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가 있는바,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